

포 상 규 칙

- 제 1 조 (목적) 이 규칙은 수자원에 관한 학술 및 기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적용범위) 학회가 행하는 포상은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- 제 3 조 (포상종별) 포상은 다음의 6종으로 한다.
1. 공로상 2. 학술상 3. 기술상 4. 저술상 5. 논문상 6. 학위논문상
- 제 4 조 (공로상) 공로상은 우리 학회에서 5년 이상 활동한 회원중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로서 수자원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.
- 제 5 조 (학술상) 학술상은 우리 회원중 수자원에 관한 탁월한 저서 또는 논문을 발표하여 학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한다.
- 제 6 조 (기술상) 기술상은 우리 회원중 수자원기술에 독자적인 창의력등을 발휘하여 현저히 기술향상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.
- 제 7 조 (저술상) 저술상은 우리 회원중 저술활동을 통하여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.
- 제 8 조 (논문상) 논문상은 우리 회원중 학회 논문집(당해년도)에 가장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에게 수여한다.
- 제 9 조 (학위논문상) 학위논문상은 우리 회원중(당해년도) 우수한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한 자에게 수여한다.
- 제 10 조 (이중수여의 금지) 동일한 학술 및 기술업적이나 공적에 대하여 제 3조의 포상을 거듭 수여하지 못한다.
- 제 11 조 (심사위원회 구성)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둔다.
- 제 12 조 (수상후보) ① 제 3조의 수상자 후보는 정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이 있거나 또는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.
② 전항의 추천을 할 때는 수상후보자의 연구 또는 기술업적, 공로개요 및 선정이유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전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심사위원회는 그 심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 13 조 (수상자 결정) 제 12조의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.
- 제 14 조 (심사수당) 제 12조의 심사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197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칙의 일부 개정은 199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칙의 일부 개정은 200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